

『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4월 30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5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5월 7일

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-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건립한 구포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복지관 이용대상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으로 규정함
- 입욕료는 시장과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정함
-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운영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수 있음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완 진

- 본 조례안은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한 구포복지관(목욕탕)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지정하여 위탁운영을 할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
-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대상, 수입금관리, 위탁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